

전세권 설정등기 준비 서류

대상자	서류명
소유자 (전세권설정자)	1. 등기권리증 (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작성) 2.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사항 포함) 1통. 3. 인감증명서 1통. 4. 인감도장 5. 신분증 ※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일 것.
전세권자	1. 주민등록초본 1통. 2. 도장 3. 신분증 ※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일 것.
인본합동법무사 이병찬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425, 4층 401호 (역삼동,마이다스빌딩) Tel. 02-2285-3800 Fax. 02-6280-3811 e-mail : bc3579@hanmail.net 홈페이지 : https://naturelaw.kr 계좌 : 신한은행 110-200-528493 이병찬법무사	